

보도일시	2021. 7. 2.(금) 배포 즉시 / 총 4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 장 최관병 사무관 김영남	044-202-7190 044-202-7590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 신청 기간 연장

-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용유지 협약 체결 시 지원금 참여기한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7.6.부터 시행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장의 참여 신청 기간을 '21.6.30.에서 '21.11.1.까지 연장했다.
 - 이는 백신접종 등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3차 추경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신청 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 사업이다.
 - * (사업주)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 (근로자) 임금감소가 발생하는 고용유지조치 수용
 - 이 사업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②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③고용을 유지하고, ④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사업주는 ⑤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신청 기간이 애초 '21.6.30.에서 '21.11.1.까지로 연장되나, 올해 말까지 지원되는 한시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1.11.1.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과·근로개선지도과에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 공고문 참조

- 참고 1.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지원요건
2.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안내 포스터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김영남 사무관(☎044-202-759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참고 1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지원요건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 유지 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20년 3차 추경을 통해 '21년까지 지원하는 한시사업으로 마련

□ 지원요건

-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 ②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20.1.1~'21.11.1에 노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 준수
- ③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근로자 전체의 고용유지
- ④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임금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감소
- ⑤ **(지원금 용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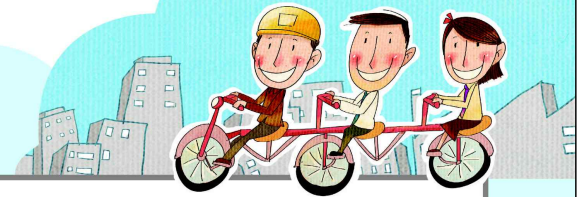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기간('21.12.31까지 최대 6개월)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 **(지원금액)**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1인당 月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 **(지원범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공모사업)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코로나 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비용을 지원



지원내용

01

- 1. 지원대상**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 2.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12.31. 까지 최대 6개월 지원)
- 3. 지원금액**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4. 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급)
- 5. 승인 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지원금은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고용지원, 감소된 인건비 지원 등 전액 근로자를 위한 용도로 활용



지원요건

02

-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재고량 증가(50%), 생산량 감소(15%), 매출액 감소(15%) 등 일정요건 충족
- 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20.1.1.~21.11.1. 기간 중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합의를 한 경우
(단,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 준수)
- 3. 고용유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기간과 그 후 1개월 간 사업장내 근로자(피보험자) 전체의 고용을 유지해야 함
(해당기간 동안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4.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경우
* 유급(무급)휴업·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삭감 등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



참여방법(공모사업)

03

- 1. 사업계획서 접수**
21.11.1. 까지 참여신청서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2.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Fax 등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다음날부터 지원금 지원 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고시 참조
※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